제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세부내용은 붙임 1,2 참조)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은 붙임 3,4 참조)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3-1호 사내이사 후보자 WANG YUEREN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WANG YUEREN	1963.01.27	-복건금산대도생물과기유한공사 이사 -CKH Food & Health Limited 동사장	-	-	본인

3-2호 사내이사 후보자 GUO YAORONG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GUO YAORONG	1949.12.10	-복주금대생물공정기술개발유한공사 동사장 -복건영생활력생물공정유한공사 R&D 센터 고문 -복건성건강보조식품화장품협회 비서장	-	-	-

3-3호 사내이사 후보자 LU JUNGAO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LU JUNGAO	1980.11.06	-복건동가부동산유한공사 회계담당자 -복건삼풍신발유한공사 재무팀 경리 -업통그룹 재무팀 경리 -정명(복건)커튼월공정유한공사 재무책임자	-	-	-

3-4호 사외이사 후보자 HUANG YI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황이	1964.08.16	-1984 년 보건농학원졸업 -2001 년 캐나다(New Brunswick) 재무및회계과 졸업 -2007 년 중국인민회계학 석사	-	-	-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2)	4(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20 만 RMB	253 만 RMB

제5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2 만 RMB	25.3 만 RMB

※ 붙임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2014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

2013 년 7 월 1 일부터 2014 년 6 월 30 일까지

CKH Food & Health Limited 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천 RMB)

과 목	주석	당 기	전 기
매출	7	1,825,725	1,643,856
매출원가	9	(868,515)	(786,625)
매출총이익		957,210	857,231
판매비 및 유통비	9	(295,172)	(255,945)
일반관리비	9	(83,026)	(74,874)
영업이익		579,012	526,412
기타손익	8	15,093	9,033
금융원가		(21,305)	(26,44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72,800	508,998
법인세비용	10	(150,951)	(143,900)
당기순이익		421,849	365,098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이익(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		421,849	365,098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21,849	365,098
비지배지분		-	-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21,849	365,098
비지배지분		-	-
주당이익	11		
기본주당이익		4.81	4.43
희석주당이익		4.45	4.03

※ 붙임2: 연결재무상태표

2015 년 6 월 30 일 현재

2014 년 6 월 30 일 현재

CKH Food & Health Limited 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천 RMB)

과 목	주석	2015 년 6 월 30 일		2014 년 6 월 30 일	
자산					
비유동자산			767,907		665,816
유형자산	12	133,546		140,188	
선급토지임차료	13	630,078		516,912	
기타비유동자산	13	4,283		8,716	
유동자산			2,689,170		2,311,451
재고자산	14	35,052		32,743	
매출채권	15,26	502,153		463,958	
기타유동자산	16	65,633		75,6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26,27	2,086,332		1,739,147	
자산총계			3,457,077		2,977,267
부채와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966,152		2,544,303
자본금	18	30,557		30,557	
자본잉여금	19	630,470		630,470	
이익잉여금	19	2,305,125		1,883,276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966,152		2,544,303
비유동부채			221,278		210,774
신주인수권부사채	20,26	221,278		210,774	
유동부채			269,647		222,190
매입채무	21,26,27	107,748		97,355	
기타채무 및 미지급비용	22,26,27	124,351		95,087	
당기법인세부채	27	37,548		29,748	
부채총계			490,925		432,964
자본 및 부채 총계			3,457,077		2,977,267

※ 붙임3: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영문)

Current MOA	Draft of Amended MOA
<Inserted>	**23B. Members' Rights to Make Proposals on Agenda Items for a General Meeting** **23B.1 For so long as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in Korea, Members may, in accordance with the Listing Rules (including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submit proposals on matters to be raised as agenda items for a general meeting ("Members' Proposal") to the Company's directors in writing or by an electronic document at least six weeks prior to the date set f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cases of an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date of the year corresponding to the date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preceding year). A Member's Proposal may be submitted by (i) one or more Members holding, as of the date of making such Members' Proposal, not less than 3% (or any lower percentage as specified under applicable laws or the Listing Rules) of the paid up capital of the Company having the right to vote at general meetings or (ii) one or more Members who have been holding, from at least 6 months prior to the date of making such Members' Proposal, 1.5% (or any lower percentage as specified under applicable laws or the Listing Rules) of the paid up capital of the Company having the right to vote at general meetings. Such proposal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a director of the Company if (i) delivered to the director in person, or (ii) mailed to the Company's head office or Company's representative or agent office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stated in the most recent business, semi-annual or quarterly report, as applicable).** **23B.2 Members submitting a Members' Proposal under Article 23B.1 may request the directors to add a summary of the Members' Proposal in the notice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under Article 24.** **23B.3 Any director who has received a Members' Proposal under Article 23B.1 shall report to the Board the fact that such Members' Proposal has been received by him or her. The Board shall accept the Members' Proposal made by Members under Article 23B.1 as agenda items for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except where such Members' Proposal is in violation of these Articles, any applicable laws or the Listing Rules (including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Any Member who makes a valid Members' Proposal shall, upon his or her request,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plain his or her Member's Proposal at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27. Participating in Meetings by Telephone or Other Electronic Means Members may participate in any meeting by means of such telephone, electronic or other communication facilities as permit all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imultaneously and instantaneously, and participation in such a meeting shall constitute presence in person at such meeting; provided, however, that while the shares of the Company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this Article 27 shall not be in effect.**	**27. Participating in Meetings by Telephone or Other Electronic Means** Members may participate in any meeting by means of such telephone, electronic or other communication facilities as permit all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imultaneously and instantaneously, and participation in such a meeting shall constitute presence in person at such meeting; provided, however, that while the shares of the Company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matters relating to the method or means of participation in a meeting under this Article 27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Listing Rule.**
30. Voting on Resolutions and Power to Demand a Vote on Poll 30.1 At any meeting of the Members the chairman shall be responsible for deciding in such manner as he shall consider appropriate whether any resolution has been carried or not and the result of his decision shall be announced to the meeting and recorded in the minutes thereof. 30.2 If the chairman shall have any doubt as to the outcome of any resolution put to the vote, he shall cause a poll to be taken of all votes cast upon such resolution, but if the	**30. Voting on Resolutions and Power to Demand a Vote on Poll** 30.1 At any meeting of the Members the chairman shall be responsible for deciding in such manner as he shall consider appropriate whether any resolution has been carried or not and the result of his decision shall be announced to the meeting and recorded in the minutes thereof. 30.2 If the chairman shall have any doubt as to the outcome of any resolution put to the vote, he shall cause a poll to be taken of all votes cast upon such resolution, but if the

chairman shall fail to take a poll then any Member present in person or by proxy who disputes the announcement by the chairman of the result of any vote may immediately following such announcement demand that a poll be taken and the chairman shall thereupon cause a poll to be taken. If a poll is taken at any meeting, the result thereof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at meeting by the chairman. 30.3 Any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shall be regarded as one Member and subject to Article 33.1 the right of any individual to speak for or represent such Memb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ere, and by the documents by which, the person is constituted or derives its existence. In case of doubt, the Board may in good faith seek legal advice from any qualified person and unless and until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hall otherwise rule, the Board may rely and act upon such advice without incurring any liability to any Member. 30.4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herein,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decisions at any general meeting shall be made based solely on voting by poll.	chairman shall fail to take a poll then any Member present in person or by proxy who disputes the announcement by the chairman of the result of any vote may immediately following such announcement demand that a poll be taken and the chairman shall thereupon cause a poll to be taken. If a poll is taken at any meeting, the result thereof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at meeting by the chairman. 30.3 Any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shall be regarded as one Member and subject to Article 33.1 the right of any individual to speak for or represent such Memb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ere, and by the documents by which, the person is constituted or derives its existence. In case of doubt, the Board may in good faith seek legal advice from any qualified person and unless and until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hall otherwise rule, the Board may rely and act upon such advice without incurring any liability to any Member. 30.4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herein,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decisions at any general meeting shall be made based solely on voting by poll. **30.5 For so long as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in Korea, the Board may determine by a resolution of the directors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that, in case where voting at a general meeting is taken by a poll, any of the Members may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online (whereby the votes are submitted prior to the actual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online) in accordance with the Listing Rules (including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such case, the notice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under Article 24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i) the address of the website where such voting can be made online, (ii) the period for such online voting (provided that the last day of such period shall be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and (iii)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relating to the online voting. The Company may outsource the operation of online voting to a third party. Members having made a vote online shall not be entitled to withdraw or change the vote so exercised.**

※ 붙임4: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국문)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추가>	**23B. 주주총회 안건 발의권** **23B.1 주식이 한국의 지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주주는 상장규칙(상법의 관련 규정 포함)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제안("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일자(연례 주주총회의 경우, 전년도 연례 주주총회일자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일자)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회사의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주제안은 (i) 해당 주주제안일 당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 납입자본의 3% (또는 관련 법률 또는 상장규정에 명시된 그보다 낮은 비율) 이상 보유하는 1인 이상의 주주 또는 (ii) 해당 주주제안일자로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 납입자본의 1.5% (또는 관련 법률 또는 상장규정에 명시된 그보다 낮은 비율) 이상 보유하는 1인 이상의 주주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해당 주주제안은 (i) 인편으로 이사에 전달되는 경우, 또는 (ii) 회사의 본사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가장 최근 사업,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에 명시된) 회사의 대표나 대리인 사무소에 우편으로 송부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3B.2 23B.1조에 따른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주주는 이사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주주제안의 개요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3B.3 23B.1조에 따른 주주제안을 수령한 이사는 자신이 해당 주주제안을 수령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가 제23B.1조에 따라 발의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하되, 해당 주주 안건발의서가 본 정관, 관련 법률 또는 상장규정(상법상 관련 규정 포함)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한 주주제안을 발의한 주주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주제안에 대해 설명한 기회가 부여된다.**
27. 전화 기타 전자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참석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전화, 전기 기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본 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7. 전화 기타 전자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참석**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전화, 전기 기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본 27조에 따른 총회에 참여하는 방법 또는 방식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상장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30. 결의의 의결 및 투표로 의결을 요구할 권한 30.1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가결되었는지 여부를 선언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선언은 주주총회에서 공표되	30. 결의의 의결 및 투표로 의결을 요구할 권한 30.1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가결되었는지 여부를 선언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선언은 주주총회에서 공표되

어야 하며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30.2 의장이 (거수에 의한) 표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의결이 투표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이 그와 같은 투표에 의한 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또는 의결권행사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주주로서 (거수에 의한) 표결에 관한 의장의 공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공표가 이루진 후 지체 없이 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총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장이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0.3 개인이 아닌 어떠한 법인 주주도 1명의 주주로 간주되어야 하고, 제33.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및 주주를 대표할 권리는 그 법인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지역의 준거법 및 서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달리 판단하기 전까지 이사회는 선의에 입각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사회는 당해 법률의견서를 신뢰하여 행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0.4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오직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야 하며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30.2 의장이 (거수에 의한) 표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의결이 투표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이 그와 같은 투표에 의한 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또는 의결권행사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주주로서 (거수에 의한) 표결에 관한 의장의 공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공표가 이루진 후 지체 없이 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총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장이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0.3 개인이 아닌 어떠한 법인 주주도 1명의 주주로 간주되어야 하고, 제33.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및 주주를 대표할 권리는 그 법인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지역의 준거법 및 서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달리 판단하기 전까지 이사회는 선의에 입각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사회는 당해 법률의견서를 신뢰하여 행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0.4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오직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30.5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총회에서 투표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주가 상장규정(상법 관련 규정 포함)에 따라 자신의 의결권을 온라인으로 행사(이 경우 투표는 실제 총회 이전 온라인으로 제출된다)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들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4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i) 해당 의결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ii) 해당 온라인 의결기간 (단, 해당 기간 최종일은 총회일자 하루 전이어야 한다) 및 (iii) 온라인 의결에 관한 기타 행정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회사는 온라인투표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투표한 주주는 그와 같이 행사된 투표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